

경인지방우정청 공고 제2019- 112호

「2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국 추가 지정」에 따라 동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7일
경인지방우정청장

「2인 이하 근무관서 점심시간 휴무 시행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 추진내용

우정사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2인 이하 근무우체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점심시간 교대근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취약시간대 사고 예방 및 우체국 이용고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우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함

가. 점심시간 휴무제도 추가 시행관서(1국)

총괄국	대상국	관서등급	정원	점심 휴무시간
안 산	안산법원우편출장소	출장소	2	12:00 ~ 13:00

나. 시행일 : 2019. 4. 29.(월)

2. 의견제출

동 추진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4. 18.(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주 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5(탑동)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o 전 화: 031-8014-3111, 팩스: 0505-005-1251

o 이메일: eunjo@korea.kr

3. 기타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경인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31-8014-31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